

바

성폭력

Vol. 4
2012 상반기

1

기획특집 [선거와 성폭력]

- 6 선거와 성폭력
- 10 성차별·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제안
- 17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2

쟁점과 입장

- 22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에 의한 2차 가해에 제동을 걸다

대안 읽기

- 26 생존키트: 제도권 밖에서의 지원

프리즘 [의료인, 성폭력]

- 31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해
- 34 의료기관 취업 및 의료인 면허 관련 법률과 입장
- 38 성범죄 규제에 대한 시론
- 42 성범죄 규제에 대한 시론

성문화 읽기

- 46 비키니시위가 뭐 어때?

3

생존자 말하기

- 54 희망을 쓰는 이

성폭력과 사람들

- 58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람들

사례연구

- 63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생존자에게 힘을 준다

상담통계

- 68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통계

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 읽기

- 74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과연 누구인가

날말퍼즐

- 82 아낌없이주는나무



1

기획특집 [선거와 성폭력]

선거와 성폭력

성차별 ·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제안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와 성폭력

김두나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선거와 우리의 삶

2012년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두 번이나 시행되는 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와 공약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각계각층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도입되는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일상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가진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는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올해 시행되는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 국면을 성폭력 및 성·인권 관련법과 정책을 감시하고 제언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또한 성폭력 근절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담소의 법·정책운동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정책운동은 상담소의 20년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자의 현실이 열악한 법·제도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조차 사법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을 비롯하여 법조인의 성인식 개선 운동,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실제로 상담소를 비롯한 반성폭력 운동 진영의 요구와 제언으로 생겨난 여러 정책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사건해결과 치유, 권리 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하는 법과 정책의 확립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물론 법과 제도의 도입만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폭력·성차별적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법과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 또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로 만드는 변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법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성폭력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신고율과 기소율, 유죄선고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거나 문제제기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렵게 신고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낮은 이해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기 일쑤다.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보장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조'의 문제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팽배하다.

이렇듯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성폭력적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성폭력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시민의 공분이 높아지자 정부가 성급하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제도가 기여하려면 성폭력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이해, 그리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현실과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근시안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나아가 성차별적 사회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물론 성폭력·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정치인의 힘만

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성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회를 문제제기하고 변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좋은 기회다. 유권자들은 각 지역의 후보들과 정당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없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후보와 정당은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폭력 정책과제들을 공약의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성폭력·성차별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보들과 정당,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가능해진다면 성폭력·성차별적 사회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는 평등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 ·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제안

성차별 ·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2년 총대선 국면을 성폭력 및 성 인권 관련법과 정책을 감시하고 제안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상담소는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만나고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을 조장하고 묵인하는 사회를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아래 기술하고 있는 여섯 가지 제안은 평등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는 총·대선 후보들과 정당,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은 강력범죄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

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의 경우에는 존치하고 있다.

◎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2.3%에 불과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강간 및 강간 미수).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암수화 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수도 매우 적다. 가해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서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 친고죄 조항의 범죄는 고소 취소 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정책과제

◎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친고죄로 인한 불기소 및 무죄판결 통계 공개

◎ 가해자 또는 수사·재판담당자로부터 합의 종용 등, 친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성폭력 2차피해의 부당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그동안 반성폭력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로 현행법체계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 도입, 진술녹화제 도입과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심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된 법규정과 제도들이 구체

적이지 않아 실무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의 미비로 여전히 성폭력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과 영국의 청소년 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41조,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는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및 채택을 제한하고 있다.

■ 정책과제

◎ 수사, 공판절차에서 신문내용 제한 규정 신설(피해자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 형사사법 담당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피해자 경험과 관점 존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선 및 예산 투자

◎ 법률조력인제도 성인으로 확대

3.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안정화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법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도 비현실적인 수준의 지원금으로 인해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성차별,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성폭력피해자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 수행 주체와 자금 운용 주체가 다르고 여성가족부에 사업운영만 담당할 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

에 대한 내실 운영과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부처 간 예산 싸움만 반복되거나 효율성과 자금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정책과제

◎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4. 형법 개정: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기본법인 형법에는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주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개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조차도 적용 법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구성요건이나 양형 등에 있어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성폭력 개념 규정

성폭력은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자유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협소한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

• 성폭력은 성별과 상관없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범죄이나, 현행 형법이 강간을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등 유사성교행위나 이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낮다.

• 현행법상 '법률상의 처'가 부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해석상으로도 부녀는 혼인여부를 불문한다고 확립되어있으나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07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 제 18항에는

정부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폭력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재고의 노력 강화와 부부강간 범죄화를 권고하고 있다.

• 성폭력은 타인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행동을 한 행위만으로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폭행 및 협박이 없는 경우, 폭행 및 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하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성폭력 범죄를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고소기간의 개념과 중첩되어 공소시효와는 별도로 법적해결가능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총 상담건수 중 약 10%가 공소시효 도과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나이에 인한 인식능력의 부족,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건인지 지연, 자책감과 수치심, 주위의 비난과 불신,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강간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수많은 사건의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회피를 막지 못하고 있다.

■ 정책과제

- ◎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관련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흡수.
- ◎ 형법 32장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변경
- ◎ 강간죄의 대상 확대 및 행위 확대
- ◎ 성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 비동의 간음죄 신설
- ◎ 강간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의 실효성 확보

5.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수집 및 집적됨으로써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대체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입소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산관리번호의 경우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동하여 관리되어 피해자 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시설 소재지 노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찾아오는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시설이용 종료 후 5년간 입소자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책과제

- ◎ 전산망을 통한 성폭력피해생존자 개인정보 집적 폐지
-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통계 시스템 구축
- ◎ 각 부처별 중복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조정 및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6.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내 성교육 시수가 할당되어 있으나 대부분 집단교육으로 일회적 특강의 형태로 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대 총선, 행동하는 유권자가 세상을 바꾼다

편집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이 날아들고, 주요 후보들의 행보가 시시각각 보도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모든 지역구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각 유권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집으로 배송되는 공보물을 꼼꼼히 보는 것,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비교해보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기준을 확인해보므로써 좋은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공통분모를 가진 이들이 모여 유권자 모임을 조직하고 정당·후보자를 검증하고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상담소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만나서 함께 힘을 키울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했다. 3월 10일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의 부스 행사를 통해 '성·인권 감수성 후보를 뽑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은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를 긍정하고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몸가짐을 조심시키거나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성폭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만 귀결될 위험이 있다.

◎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교영역에서는 학생(유치원생부터 전문직원훈련원생까지 포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의원 등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일반시민, 전문집단, 사회적약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정책과제

- ◎ 공교육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조사 실시
- ◎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제정
- ◎ 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체계 수립

배부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번 글을 통해 상담소가 주최 혹은 참여하는 유권자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슈와 방식으로 펼쳐지는 유권자 운동 중 관심이 가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봄으로써 좋은 후보를 뽑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여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를 발족해 여성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고, 여연의 회원단체인 상담소도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여연 회원단체로서 노동·복지·여성인권 등 다양한 이슈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오랜 시간 19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성 유권자가 체감하는 핵심 여성정책 20개를 선정하여 전국 246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정치인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말해줄 것이며, 여성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유권자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우선은 대학생과 함께 간담회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20~30대 여성 대학생이 원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내고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려내어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단체와 대학 내 조직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3월 28일에는 광화문에서 여성 유권자의 요구안이 담긴 마스크 게임 퍼포

먼스를 펼쳐 선거운동시기 진행할 유권자 캠페인의 발족을 알려냈고, 이후 선거일 전까지 야외에서 신선하고 즐거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상담소 유권자 캠페인 “상담소와 만나는 한낮의 거리 산책”

상담소는 4월 첫 주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 오후, 인파 속에 불쑥 나타나 거리 캠페인을 열어 다양한 액션을 펼치며 유권자를 만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상담소의 **반성폭력정책과제** 등을 유권자에게 알려내려 한다.

회원 커피 파티* “상담소 coffee party”

4월 초, 테이블에 둘러앉아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에 가지는 생각을 풀어내는 커피파티를 연다. 각자의 지역구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풀어내는 대화를 통해 신나는 정치 수다를 나누고, 향후 상담소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보려 한다.

2012년 4월 3일 오후 7시 30분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근 카페

마포을 지역 여성단체 커피 파티 “마포을에서 여성을 묻다”

상담소가 있는 마포을 지역은 굼직한 여성단체들이 소재하고 있는가 하

* 커피 파티(Coffee Party)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정치 운동이다. 참여자들은 다과를 놓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일상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개인의 정치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자신의 요구안을 정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정치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커피당(Coffee Party Korea)’이 만들어졌고, 유권자 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커피 파티 운동이 시작되었다.

면,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후보들이 출마한 상태다. 이에 여연의 회원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마포을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커피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과 함께 마포을 지역구 후보별 주요 여성 정책과 여성관을 함께 검토하며 좋은 후보의 기준을 만들어보고, 서로가 꿈꾸는 여성 정책을 나누고자 한다.

2012년 4월 5일 오후 7시 30분 | 공간 여성과일 지하 1층 '나비'

2012 총선맞이 마포구 유권자 모임 “보트피플(votepeople)”

상담소가 함께하는 것은 여성이슈뿐 아니다. 총선을 맞이하여 마포 지역의 독립생활자·비혼여성·성소수자 개인과 마포지역에 위치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마포 지역 유권자모임 보트피플(votepeople)이 만들어졌고, 상담소도 이에 연대하고 있다. 독립생활자·비혼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후보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후보자 토크쇼와 유권자 파티를 개최하여 마포지역의 유권자들과 만나려 한다.

2012년 4월 1일 오후 7시 | 홍대 라이브클럽 주(ZOO)

2

쟁점과 입장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에 의한 2차 가해에 제동을 걸다

대안읽기

생존키트: 제도권 밖에서의 지원

프리즘 [의료인, 성폭력]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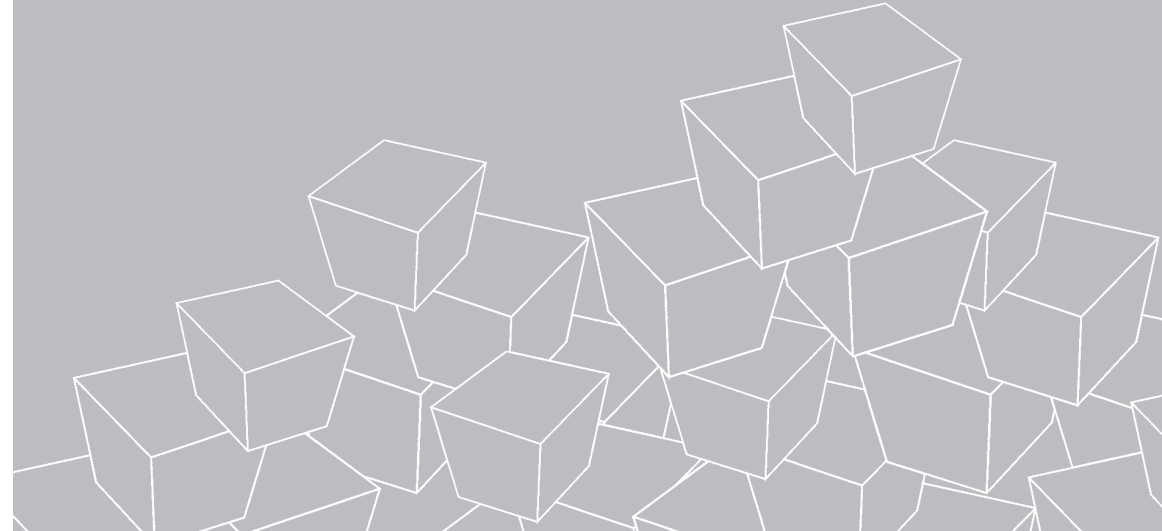
의료기관 취업 및 의료인 면허 관련 법률과 입장

성범죄 규제에 대한 시론

성범죄 규제에 대한 시론

성문화 읽기

비키니시위가 뭐 어때?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에 의한 2차 가해에 제동을 걸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인 대상 명예훼손 형사고소의 의미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2011년 5월에 발생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폭력 사건’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유명 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 이어 지난 2월 3일 항소심 판결에서 가해자 3인 모두에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피해자는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가해자 변호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가해자측의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성폭력 가해자들의 2차 가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고소 이후 겪는 고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 동기 및 선후배를 대상으로 배포한 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의 실명이 학내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피해

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사실확인서는 구속된 가해자의 석방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학내에서 학우관계가 원만치 않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허위의 사실확인서가 해당 대학 내 학생 다수에게 배포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이와 관련된 소문들은 여전히 학내에 남아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러한 2차 가해를 겪으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언론에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공포감과 억울함을 호소한 바도 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 중 1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제가 된 사실확인서에 관여한 변호인 A씨를 대상으로도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법절차에서 조차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2차 가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년간 만나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소송대리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해 행동을 유발했다’, ‘피해자는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의 언어들에 가해자의 혐의 없음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행위에 관련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것이다.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성격험 등 성력’이나 ‘평소 행실’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여기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순결하지 않은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라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성윤리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에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정숙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떻게 성폭

력 사건 재판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해자 측 변호인들이 보다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의 (허위)개인사를 ‘가해행위 유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각종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의 ‘품행증거의 사용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봉인’ 제도나, 프랑스의 ‘피해자 성적 이력 등 신문 금지’ 등이 그 예다.* 사회적 편견이 성폭력 가해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인 것이다.

수사·재판과정상 생존자 인권 회복의 물꼬가 트이기를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 측 소송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인권 침해를 일삼은 사례들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행돼 왔던 가해자 측의 반인권적인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또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2차 가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수입하는 법조인들의 윤리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개월에 걸친 지난한 소송과정에 지쳐있음에도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맞서 싸우려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용기 있는 결정에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법 체제 정비에 노력해온 수사재판기관의 노력이 뜻 깊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에 힘써왔던 역사와 의미를 살려, 보다

세심한 원칙들을 마련해나가는 계기로써 이번 고소 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보도자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폭력사건’ 가해자 변호인 대상 명예훼손 방조 형사고소 지지한다”(2012.3.16)에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

■
* 한국형사법학회(2011),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와 성폭력 피해자 구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사무처.

생존키트, 성폭력 생존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는 의료비 지원과 법률비 지원이 있다.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 의료비가 지원되며, 이는 개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법률지원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동일한 심급에 대해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고 개인당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피해를 치료하는 데 3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극히 적고, 법률비용 또한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생존자가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료비와 법률비용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2009년, 더 크게 웃자

2008년, 익명의 성폭력 생존자가 ‘다른 성폭력 생존자를 위해 써 달라’며 상담소로 500만 원을 보내왔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일부이 기도 한 값진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상담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필요비용 총당이 어려운 생존자를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후원금은 본 상담소에서 1회 이상 면접 상담을 진행한 생존자 중 의료비용 및 법률비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었다. 당시 지원받은 내용은 성폭력에 의한 부당하고 대응을 위한 노무사 선임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의료비, 어릴 때의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따른 심리상담비용 등이었다.

기존의 국가 지원 체계로는 지원 받지 못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생존자에게 지원한 ‘생존자 지원비: 2009년, 더 크게 웃자’는 후원금이 성폭력 생존자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했고, 상담소에서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기금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시적이 되었다.

2010년~2011년, 생존키트

‘2009년, 더 크게 웃자’를 진행한 이후, 성폭력 생존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법률비용이나 의료비용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한 생존자에게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법적다툼, 치료만이 아니라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고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고민,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때마침 G마켓과 윤도현밴드 등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상담소에서는 이 후원금의 사용에 있어 단지 후원자의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으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부터 내용까지 생존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된 '생존키트'는 생존자의 생존을 위한, 그 시작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일단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금액 내에서 생존자 스스로 필요한 비용을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극복하고 싶은, 다시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존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기획안을 토대로 해서 필요성·독창성·실행력을 기준으로 총 3명의 생존자를 선발했다. 생존자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한 월세비용,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등록금,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비,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레슨비, 소원해졌던 가족과의 여행 등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내놓았다.

후원금이 생존자들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기획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도는, 생존자들에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게 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되었다. 처음 시행한 생존키트를 상담소에서 지속해야겠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11년에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총 6명의 성폭력 생존자가 지원을 받았으며, 여행비, 보컬레슨비, 글쓰기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체력단련비, 탕약비 등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2010년보다 더욱 풍부해졌다. 100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는 해피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후원금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다.

상담소는 2년 간의 생존키트 시행을 통해 성폭력 생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존자'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생존키트, 성폭력 생존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성폭력 생존자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지원은 성폭력 생존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적절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생존자가 스스로의 삶과 미래를 계획하고 이를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실행하는 멋진 상상력이 '생존키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목돈의 후원이 아니라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네이버 해피빈의 작은 콩들로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새 출발을 준비하는 생존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에도 생존키트는 이어진다. 성폭력 생존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작은 콩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멋진 상상은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지속될 것이다.

{ 의료인, 성폭력

2011년 봄, 같은 학과의 동기에 대한 의대생들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됐다. 이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활동이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의료인의 성인식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됐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지난 2월 1일에는 의료인은 환자의 몸을 일대일로 접촉하여 진료한다는 점을 이유로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리고 현재는 위의 개정법과 같은 취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 아·청법 개정 시 환자 단체와 의사 단체가 대립적인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인의 자격 제한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프리즘>은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문제와 현재의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글을 통해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료 공간의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배경을 알아본다. 이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 및 의사·환자단체의 대응을 살펴보고, 의료계의 대안을 제안한다. 끝으로는 본 상담소의 내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이번 논의의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짚어보았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해

김준현 |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감시사업단

병원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극빈자, 고아 등 취약계층의 피난구호소로 인식됐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와 같은 병원은 20세기에 이르러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마취술, 외과술, 산과학과 같은 의학지식이 1900년대 이래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간호서비스의 발전도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의료보장의 기능이 기존의 상병수당 중심에서 의료비 보장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가 병원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현재의 병원은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 구조에서 이윤 확보를 위한 효율성의 추구하고 관련해서도 병원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직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한 관료제적 특성이 강하며 의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고도의 전문직종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병원이다.

즉, 병원은 관료화된 조직체로서 의과학적 전문성을 강조하며, 권한과

책임에 따른 위계질서가 매우 분명한 조직체이다. 인간의 생명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나 공식적인 규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의사와 보조 인력 간에는 매우 엄격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료제적 특성하에서 역기능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병원의 관료적 치료행태를 꼬집을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를 전인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는 '질병'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체계하에서 환자를 임상학적인 측면에서 한가지의 '증례'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부장적 수직관계하에서 환자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으며, 진단·치료·검사과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한 채 점차 객체화된다. 또한 의료장비를 동반한 광범위한 의학적 개입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는 위해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환자는 건강상의 득실을 결정할만한 최소한의 정보나 판단의 여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유권을 기반을 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병원은 너무나 차갑고 건조하며 관료적이다. 의사는 자신의 치료계획에 환자가 온전히 순응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환자의 의무라고 판단한다.

또한, 병원은 다직종이 근무하는 대표적인 곳이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특성이 있어 직종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일반 관료 조직과는 다르게 병원은 이원화된 기능(행정관리기능과 의료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능 간 갈등도 첨예해질 수 있다. 주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의식구조가 직종 간 또는 기능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며, 특히 전문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토대로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간섭을 상당히 배척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직종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

각적인 수습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병원은 관료제의 병폐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의료는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재화이자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병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의료인의 면허 제한에 대한 법률과 입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의료법

편집팀

이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의료법의 개정안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의사·환자단체의 입장을 정리했다.

[경 과]

2011년

1. 6.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9.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9. 6.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 12.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2년

1. 5. 전국 의사총연합 성명서 “전 의총, 의사들에게 진찰 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 발표
2. 의료인단체(대한 의사협회/대한치과 의사협회/대한한 의사협회) 공동 의견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2. 1. 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성범죄 의사 면허를 10년간 취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전 의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한다.” 발표
- 2.15 토론회 “성범죄 의료인 취업·면허 제한, 과연 과도한 것인가?” 개최 (주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 의사총연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¹⁾)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 11287호 시행일 2012.8.2]

- ◎ 대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 기간 :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 ◎ 제한 내용 :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해당)
- ◎ 해당 시설 및 기관 :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특별법 상 청소년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의료기관

1) 아래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요약·정리한 것임.

2) 아래의 내용은 ①의료인단체(대한 의사협회·대한치과 의사협회·대한한 의사협회) 공동성명서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전국 의사총연합 성명서 “전 의총, 의사들에게 진찰 거부 외에는 답이 없다!” ③환자단체연합회 성명서 “성범죄 의사 면허를 10년간 취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전 의총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를 요약·수정한 내용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을 개정에 대한 의료·환자 단체별 입장]²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함 1. 환자와의 분쟁 대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아 의료인과 환자 간 분쟁 발생 2. 환자와의 신뢰관계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법률에 의료기관이 포함, 의료기관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질 가능성 3. 환자에 대한 임상을 전혀 행하지 않는 의료인이나 성인대상 진료만 행하는 의료인마저 취업 제한 가능 4. 방어진료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진을 통한 의료행위가 많아 방어진료를 하게 되며,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 즉,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강구 필요 2. 성인대상 성범죄 명확히 하거나 필요시 삭제 3. 의료기관의 범위 명확화 4. 의료행위 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취업제한 여부 결정 필요

전국 의사총연합	한국환자단체협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가 포함됨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만 인정할 뿐 성인 환자에게 대한 성범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임
- 형량의 경중 없이 면허 행사 10년 제한은 전문인인 의료인의 경제적 활동의 중지를 뜻함 - 의료인에 한해 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불평등함	- 성범죄의 재범률이 타 범죄에 비해 높은 점, 폐쇄된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타 범죄보다 높음
- 의료인의 특성 상 진료 행위가 성범죄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함	- 성인 환자들은 '진료'와 '성추행'을 구분할 만한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
- 의료인의 고도화된 전문성과 윤리성은 사회가 함께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가능함	- 의료인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이 그동안 지켜져 왔다면 법률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을 것임

[의원별 의료법 일부개정 발의안]³

	김춘진 의원 발의 법안 (2011.1.6)	최영희 의원 발의 법안 (2011.9.6)
대상 및 제한 내용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특별법 중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상세는 하단의 법안을 참고) 면허를 취소,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함.	성폭력특별법/아동청소년법을 위반했을 경우 1)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2)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5년 이내 재교부 불가
개정안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6. <신설>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부터 제10조까지·제12조·제1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p> <p>② (생략) 제6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영구히 재교부하지 못한다.</p>	<p>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p> <p>5.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생략)</p> <p>② (생략)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p>

3) 아래의 내용은 해당 발의법안을 요약·정리한 것임. 개정안의 경우 내용상의 이해를 위해 현재의 법률 중 일부를 남겨두되 기울임꼴(italic) 처리하였음.

4) 아래의 조항 중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함.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성폭력특별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4조(특수강간 등)·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

성범죄 규제에 대한 시론

최규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2007년 수면내시경 환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의사에 대한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8년에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 두 명을 성추행하여 다시 한 번 의사들의 성범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의사가 벌금 700만 원을 내고 진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아동성폭력 사건인 일명 '조○○ 사건'을 통해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촉각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대생들이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촬영까지 한 사건이 터지며 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법적 규제와 의사협회의 입장

이에 관한 법적 문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취업제한과 의료법상 면허 박탈로 크게 두 가지다.¹⁾ 결국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영구히 진

1) 자세한 내용은 앞의 원고를 참고.

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대했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자와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의료법으로 면허까지 박탈한다면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협회는 면허 박탈까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면허 박탈에 관한 문제는 법적제재가 아닌 의사회 자체적 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점과 현실적 방안

의사들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주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의사협회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인다. 의사협회가 한국사회에 보여준 그간의 모습은 자체적인 자율규제가 불가능한 조직임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둔 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어 성희롱적인 건배사를 던진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내부의 ‘자율적’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구체적 정황이 포착된 1억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자율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 판사, 변호사와는 달리 면허박탈까지 처벌한다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업무형태의 특수성

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다른 전문직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따질 수만은 없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은 다분히 의사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반감에 기댄 일부 국회의원들의 성과주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줄속으로 법만 만들었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사협회의 지적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법적 제재로만 환원될 경우 몇 건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방어적 진료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의료윤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과 같이 의사협회 외곽에 별도의 의사면허 관리 기구를 두자는 의견에 대해 다소 부족하나마 현시점의 해결점으로서 주목해 볼 만하다. 즉 의사뿐 아니라 공무원, 법률가, 시민단체, 환자대표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면허 관리 기구를 두어서 성범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규제에 앞선 근본적 문제들

하나 이런 조치들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환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의사들을 양성해 내고 있지 못하는 의료교육과 의료시스템의 현실이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들의 성범죄는 성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전이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마땅

하다. 매년 의사들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하지 않은 채 사후의 규제만 논한다는 것은 암덩이는 떼어내지 않고 당장의 통증만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불거진 병변에 대한 치료를 방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비의료인, 즉 의대생의 선발과정부터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 사명감과 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늘어나는 의사들의 성범죄를 비롯한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의대교육은 선발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대생에 대한 윤리교육은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며 그조차 인문계 고등학교의 예체능 과목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의 상황은 윤리적인 인성을 갖춘 학생이 의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상과목에 치중된 암기식 교육만이 강요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인성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대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학업능력은 의학을 배우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 선발 이후에도 의료윤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적어도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 정도의 개선 없이 의료인의 성범죄를 비롯한 비윤리적인 행태가 법적 규제만으로 조절되리라고 보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수술이다. 그리고 그 수술은 이윤에 혈안이 된 돈벌이 의료가 아닌 의사의 본업에 의료를 다시 서 있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인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제언

편집팀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일괄적으로 10년간 금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의료인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과 유예, 선고유예 등에 따라 경과기간을 달리 정하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5년 이후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이하 의료법) 개정 발의안은 의료인¹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있어 법적 규제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미비한 점도 존재한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크거니와 성폭력 문제를 비롯,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윤리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문제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의료인 및 법조인과 함께한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논의의 주된 내용을 이 글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이번 법제·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²

1) 본 원고에서 '의료인'은 아·청법 및 의료법의 규제 대상인 의료인·의료인이 되고자하는 자를 통칭하기로 한다.

2) 정리된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완성된 의견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해 심층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다.

쟁점 1. 법체계 상의 문제

현재 아·청법이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 특수한 권력관계에 있는 교사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다. 이번 아·청법 개정을 통해 취업 제한 대상에 의료인이 포함된 것은 위의 논리와 더불어 개인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 진료행위 중 의사와 환자 간의 권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에 아동·청소년 대상 의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청법 상 취업·운영 제한 대상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의 경우, 소아과를 제외하면 환자의 연령별로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의료인은 모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성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제한을 아·청법에 규정하는 것도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제한 기간을 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10년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는 논란을 부를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까지를 우려한 것이라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며, 결격사유나 면허취소의 기간 등을 선고형량 등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자격제한은 마약·대마·항정신성 중독자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의료행위 관련되어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지만³,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은 범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지적하는 타 전문직과

3)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및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결격사유의 범주가 매우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 2. 실효성의 문제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의료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경우, 의료행위를 성추행으로 오인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기에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탓에 진술로만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지나치게 확대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는 의료소송의 개념이 처음 생길 때 의료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여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일 무고에 대한 위협이 우려스럽다면 간호사 혹은 환자의 동행인이 진료 시 동반하거나 진료실의 문을 열어놓는 것, 진료행위에 있어 사전에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방안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의료인이 성폭력 가해자일 경우 법적 규제를 피하고 의료기관의 영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일 합의를 통해서 가해행위나 직업영위 등에 면죄부를 받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커지거나 가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 3. 법적 규제 이외의 문제

반성폭력 운동 진영에서는 처벌 강화 정책이 사법부의 성폭력 피해 인정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유죄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감이 높아지므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될 것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폭력 사건은 물적 증거를 남기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이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하여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다양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률 이외의 대안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사후조치일 뿐이며,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만으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의 기초는 성폭력 가해자를 특정한/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고, 국가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제 몫을 다했다고 여기도록 만든다. 반성폭력 운동 진영은 이러한 법 개정의 방향이 일상의 문제이자 권력과 인식의 문제인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 둔화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 이후의 처벌·규제 방안과 동시에 의료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 양성 시 성·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의무화하고, 의료인 대상 재교육 시에도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의료인의 인권의식이 의료인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키니시위가 뭘 어때?

구성 : 두나, 마도, 배, 토리 |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정리 : 토리

지난 2월에 있었던 '나는꿈수다 코피사건'은 '진보'를 자처하는 남성들의 젠더감수성 결핍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반성폭력> 이번 호에서는 '나는꿈수다 코피사건'에서 미처 얘기되지 않았던 '비키니시위' 이야기에 초점 맞춘 '가상 대담'을 마련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뭘어때·진보남·건전성·꿀페미'가 보여주는 관점들은 반성폭력 운동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지형의 일부를 보여준다. 네 인물의 대화를 통해 '비키니시위'를 다시 생각해보자.

비키니시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어때 :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저는 비키니시위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위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키니시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집중해서 얘기해보는 이런 자리는 오히려 협소한 논의로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진보남 : 반갑습니다. 저는 모 웹사이트 정치사회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진보정당 당원으로 다수의 투쟁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키니시위'가 정치역사에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이 여성성을 이용하여 공격적이지 않은 새로운 투쟁방식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정치 주체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전성 : 저는 대한성문화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이번 비키니시위에 참여하신 분을 보면서 '세상이 말세다'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전 그 여성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요, 같은 여성들을 망신시킨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주목받고 싶을 땐 꼭 그렇게 입어야 하나요? 그런 면에서 전 불편하고 불쾌했고 그 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꿀페미 : 저는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위 방식에 대한 존중을 떠나서, 가부장제가 견고하고 성차별이 난무한 사회 안에서 여성이 '비키니' 모습으로 시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을 거치면 이번 사안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더 섬세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성의 몸 ≠ 남성의 몸

진보남 :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학도 배우고 페미니즘 책도 봤거든요. 제가 알기론 서구에서 성해방 담론이 나오면서 브래지어를 태우는 시위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성들도 스스로의 몸을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성운동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여성이 실천한 것이고, 이런 방식의 시위들이 여성운동과 진보가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꿀페미 : 여성운동 진영이 스스로 비키니시위 같은 방식들을 시도해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진보남 : 뭐 어쨌든, 그런 점들을 보고 배워야한다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운동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새로운 여성 주체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성

주체와 진보의 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건전성 :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저는 괴리된 느낌이 드네요. 난 솔직히 말하면 그 비키니시위하신 여성분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남성들의 시선을 즐긴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성폭력이 가해자의 잘못이고 범죄인 건 맞지만 여성의 노출이 문제라는 말도 하잖아요. 모피반 대하면서 누드시위하고 그런 것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뒤편 : 그건 맥락이 다른 거죠. 모피시위를 왜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성의 행동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봐주면 안 되나요. 여성의 몸이라서 어떻게 봐야 한다는 틀을 버리고 지나치게 과대해석도 하지 말고요.

꿀페미 :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의 의미가 이 사회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 비키니시위가 논란이 되었을 때, 나꼼수 진행자들이 코피, 성욕감퇴제 등등의 표현을 했었죠. 여성들이 어떤 주체적인 판단과 행위를 실천해도 남성들의 시선으로 희화화 되거나 전유되는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런 시위가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남성 마초들의 공격은 계속 된다는 거죠. 분명 누군가에겐 매우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뒤편 : 그걸 그렇게 까지 봐야 되나요? ‘비키니시위가 앞으로 계속되는 것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과한 해석 아닐까요. 한 개인의 행동을 갖고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단체들은 오히려 그런 시위에 대한 우려를 말하기 전에 남자들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꿀페미 : 이번 비키니시위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과 나꼼수 진행자들의 반응을 논하는 것은 따로 가야 하는 부분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공존했다고 봐요. 저희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들은 ‘페미니스트가 비키니시위녀를 비하 시킨다’고 말했죠. 자신들이 젠더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으니, 도리어 페미니스트를 우매한 집단으로 만들면서 논란을 피해 도망간 거죠.

진보남 :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로서의 그 여성의 태도를 존중하자는 말은 한 거예요.

건전성 : 그리고 보니 상반신을 보여주며 시위한 남성도 있었네요. 나 원 참, 남사스러워서.

진보남 : 비키니시위를 한 여성이 너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서 남성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꿀페미 : 남성 누드로 맞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나꼼수 진행자들의 언행에 대한 논란의 의미를 회피한 거죠. 두 시위를 비교해서 똑같다고 말하는 것도 납득되지 않아요. 탈의를 해도 행위자의 성별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은 모든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왜 남성 연예인들의 노출은 당연하게 방송되는데, 자넷 잭슨의 경우 실수로 옷이 벗겨졌음에도 그 모습을 방송한 방송국에 벌금이 부과된 걸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진보남 : 맞습니다. 여성이라서 남성과 다르게 대우받는 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주체적으로 언론이 되고 1인 매체가 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여기서 양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자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얘기 아닌가요.

‘자유이지’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

꿀페미 : 이 자리는 ‘비키니시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별의 문제가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보남 : 그 분이 여성이든 아니든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결연하게 한 시위에서 왜 자꾸 여성이라는 점을 거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꿀페미 : 그럼 여기 모인 분들 각자 자신의 입장을 벗어나서 그 사진을 본 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뭉어때 : 저도 진보남 님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자기 생각의 표현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모습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자기 몸을 소비했다고 보면 문제일까? 그 자체는 문제될 건 없죠.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레이디가가 같은 사람들이 퍼포먼스 했을 때랑 비슷한 면도 있죠. 시상식에서 여배우 노출경쟁 하는 거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아주 낯선 건 아니잖아요.

진보남 : 솔직히 글래머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나꼼수 진행자 세 명의 말을 성희롱이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당사자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건 성희롱이 아니죠. 그리고 정○○ 석방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새롭고 좋았죠.

뭉어때 :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싫거든요. 비키니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고요.

건전성 : 그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는 남성들도 반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벗고 자기 사진을 찍고 올리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꿀페미 :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건전성님과 같이 그분을 비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비키니시위를 했던 여성에 대해서 나꼼수 진행자들이 문제가 된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성연예인 사진으로 리플놀이 하듯이 네티즌들의 밥이 되고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건 그 여성이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은 그 여성의 모든 행위를 ‘여자가 ○○했다’는 것으로만 볼 거라는 거죠.

뭉어때 : 자랑스러울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할 정도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한 거죠. 그럼 시위에서 성공한 거죠. 그럼 자기 목적 달성을 한 거고요.

꿀페미 : 물론 이 여성은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자기 사진을 올렸고, 이 사진이 유포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공간에서도 여성들의 몸은 자기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대상화 될 가능성은 늘 있고 이진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라는 거죠. 삼국카페에서 성명을 낸 것도 이런 틈새를 목격한 후 여성들이 갖는 분노였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전성 : 저랑 조금 비슷한 생각일 수 있네요.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성희롱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불쾌하기도 했고 보자마자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시위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그럼 그게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죠.

진보남 : 총선이 내일모래데, 여성분들끼리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건전성 : 어쨌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을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좋겠는데요.

뭉어때 : 왜 힘을 합쳐야 되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비키니시위를 한 게 여성이라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만 너무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규정짓고 관심 갖는 거 아닌가요?

같은 듯 너무 다른 이야기

꿀페미 : 이걸 뭉어때 님 말씀처럼 그 여성을 어떤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비키니시위에 관심 갖는 것은 여성연대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건 진보남 님이 이야기하는 ‘힘을 합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뒤편: 여차피 우리는 다 개인이고 여성들끼리 각자 다른 것도 너무 당연한 데 연대를 주장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말로 끝날 거 같네요.

꼴페미: 개개인을 성별을 무시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그 속에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남성 구도로 얘기하는 것은 차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난 한 번도 차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들이 극소수인 사실이 뭘 말하겠어요.

뒤편: 차라리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직장에서 왜 여자들만 유니폼 입으라고 하나. 그런 게 오히려 더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거든요. 페미니즘처럼 자기가 가진 이즘(ism)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도덕적이고 삶이랑 괴리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아는 언니도 직장에서 직장내성희롱 얘기하면 너무 성도덕주의자가 되고, 그 언니 앞에서는 동료들이 아무 농담도 안 하고 해서 힘들었거든요.

꼴페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맞는 말을 하면 이상한 대접을 받는 생활이 정말 싫은 거죠. 법으로 처벌되는 걸 빼면 나는 넘어가고 관대할 수 있고 그냥 쿨한데, 그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판단을 들이대나 싶겠죠. 하지만 쿨한 마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회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의 ‘다른 판단’을 보고 페미니스트 꼰대라고 부른다면 전 그냥 그렇게 꼰대가 되어 사는 게 내가 할 일이겠구나 싶기도 해요.

진보남: 맞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나가면서 연대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꼴페미: 젠더이슈는 늘 항상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3

생존자 말하기
희망을 쓰는 이

성폭력과 사람들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람들

사례연구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생존자에게 힘을 주다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년 통계

희망을 쓰는 이

shy

꽤 시간이 흘렀다. 2011년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누군가의 발에 눌러 차갑고 축축하고 불쾌한 토사에 다시 묻혀버렸다. 학생회의 일원이었던 나는 신입생 O.T에 간부 인사를 하기 위해 참가를 했다. 내가 소속된 상경대에서 첫째 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 과 동기, 후배와 놀고 돌아와 학생회 선배들과 놀다가 함께 자게 되었다. 그 방에 여자는 나 혼자였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 내가 겁도 없었지. 그날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어둡지만은 않았던 새벽 6시경 학생회 간부이자 과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누구보다 기대했던 오리엔테이션은 그때부터 울음과 긴장, 초조함, 수치심으로 가득 찼고, 이후 타 단과대 간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관련 행사는 아무것도 참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끔찍 았던 나와 달리 수천의 신입생과 재학생 앞에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던 그 선배. 도움을 구했던 내가 정말 좋아한 학생회장과 언니는 덮기에만 급했고 갓 들어온 신입생과 학교 다닐 날이 더 많은 재학생 앞에서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학생회 임원으로서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난 결국 참다 참다 국장직을 사퇴하

고 가해자와 그만을 옹호하는 학생회 연합군들과 등을 졌다. 해결을 하려 여러 선배들을 찾아가봤지만 나를 외면하거나 도움을 주다가 나처럼 힘들어지는 결과만 낳았다. 학교에서 성윤리위원회가 열리고는 했으나 형식일 뿐이었다. 일반 학생도 아닌 학생회 간부라 그런지 가해자는 증거 부족, 옹호자들은 처벌 불가로 학교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버렸다. 성추행에서 있어 증거라……. 온몸에 녹음기와 블랙박스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사과 문자와 일관적인 나의 진술과 모든 것이 딱 떨어졌던 나의 정황에 대한 주장이 위원들과 학생회 분들은 사상누각이라 여겼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학생회 봉사 장학금도 받고 1년을 잘 보냈다. 내가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상담도 하고 1년이란 긴 시간을 휴학하는 동안 가해자는 인생 참 편하게 지냈다. 그동안 나를 함께 도와줬던 사회대 언니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얻어 고소를 했고 가해자는 형을 받았다. 고작 벌금 100만 원이었고 학생회 내에서는, 학교 내에서는 전혀 벌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소소하게나마 내 결백과 그의 위법을 인정하는 그 벌금 100만 원 결과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다. 가해자로 인한 수치심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 좋아했던 우리 학생회 사람들의 배신과 그로인한 인간 불신, 학교마저도 내 문제에 대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한 듯했고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다. 자신감도 없었고 우울함은 물론이거니와 나란 존재의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2011년 2월 말 나는 똥을 밟았다. 나는 잘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내 옆에 와 누웠고 추행을 했다. 비록 학생회 분들이 모두 나를 비난하고 그의 편을 들었지만, 비록 온라인상에 무고를 운운하고 나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글들로 가득했지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어차피 과거의 경험은 지우거나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없으면 좋았

을 그 경험”을 한껏 포장할 수밖에. 내가 조금 덜 속상하게 만들 수밖에. 그렇다면 난 어떤 경험으로 만들었을까. 먼저 내 인생에 있어 쓸모없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들을 버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설령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해와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를 해할 사람이 있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홀로의 삶이 덜 가혹하다. 다음으로 나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게 했다. 나는 그동안 성폭력 생존자들을 상당히 가해자 위주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소식을 접하면 왜 본인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을 만드느냐며,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으나 그분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 왔다. 백 번 읽고 쓰고 배워도 느끼지 못했을 생존자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한 번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분들에게 수많은 사죄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시킴으로써 없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교내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에는 나의 역량 부족과 나를 위해 선구자적인 역할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내 뜻을 펼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도 있다. 더불어 학내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피해 학생을 위해 같은 피해를 입은 학우로서 적극 지지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나름의 의지도 있다. 이번에, 성폭력과는 다소 다른 범주이나 음란물 유포, 성매매 단속 관련 일을 하는 서울시 e희망여성지킴이도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관심 없었을 지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분명 아픔을 통해 조금이나마 성장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는 나를 불행하게도 했지만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도 했다. 가해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내 정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저주와 증오로 가득 찬 마음도 오히려 요즘은 감사함으로 느껴진다. 지금 내 정인은 나와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본인

의 신념과 정의에 반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많은 것을 내던지고 나를 적극 도우려 했던, 지금은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남친이 된 그! 그동안의 많은 오해와 경계로 당신의 본의를 의심하여 죄송합니다. 당신이 있어 늘 힘이 되고 행복합니다.

끝으로 내가 성추행 관련 인물들로 인해 마음 아파했을 때마다 힘을 주던 정인의 말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보았을 때는 니 인생에서 그 사람들의 존재는 너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 없을 만큼 바람 앞에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너라는 사람의 가치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너 자신이 알기 때문이지. 어떤 면에선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님을 입증 받고 싶기 때문에 한 것이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히 보장할 수 있지. 그냥 미워하고 철저히 부숴버려. 어차피 용서는 신이 하는 거니까, 니가 용서할 필요도 없고.”

성폭력! 생존자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일이 분명하지만, 가해자(들)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 없는 만큼 정말 미미한 존재들이다. 용서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그들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불어 소중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행복해야 할 권리(나는 의무라고 표현하고 싶다)를 가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지내자.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미 자아가 손상되거나 상실한 생존자들은 홀로서기가 힘들다.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자.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람들

성폭력과사람들

무지개

2009년 7월.

채무를 갚기 위해 젖도 못 댔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직장을 다니던 내가 당시 18개월이던 아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현재의 직장으로 옮긴 때이다. 다니던 직장보다 급여는 적었을 지언정 주말근무도 없거니와 매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로 아이가 아프면 발 동동 구르지 않고 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옮기면서 저녁마다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할 계획에 마냥 설렘했던 나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처음 면접을 보면서 나는 내가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힌 상태였다. 나를 직장에 소개시켜준 A언니는 굳이 뭐 하러 이야기하느냐며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넌지시 얘기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기존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내 상황을 알고는 오히려 더 배려해주었고,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었기

때문에 더 씩씩해졌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직장에 대한 깔끔하고 바른 이미지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져 내렸고, 아이와 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틈틈이 공부해서 정규직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봐야 겠다던 다짐들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다. 늘 함께 근무하던 가해자는 처음에는 나를 많이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인 발언들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해왔고, 이혼을 할 테니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할 만큼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갔다. 심지어는 퇴근 이후의 내 시간까지도 마음대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항의도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뿐이었다. 늘 둘이서만 업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결국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점점 커져갔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마 위의 생선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나를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고 나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가족이나 아이까지 들먹이기도 했다.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당장의 생계와 채무 걱정도 그럴 수도 없었고, ‘조금만 참자. 틈틈이 알바라도 하면서 일단 채무부터 갚자. 그 이후에 당당하게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2년을 넘게 버텨왔던 것 같다. 사무실에 출근하면 ‘오늘은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하면서 농락할까. 무슨 말로 나한테 수치심을 줄까’하는 걱정 때문에 늘 불안했지만 그러면서도 꼬박꼬박 출근은 했고, 인근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메신저로 그저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뭐 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느냐’는 한결같은 반응들을 보일 뿐이었다. 결국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에 혼자 울면서 힘들어했고, 언제부터인

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며 무기력하게 지냈던 것 같다.

그러다 가해자에게 강간까지 당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차일 피일 미루면서 끊임없이 모텔에 가자며 마치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해자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겠다 싶었던 나는 '그간의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나, 내가 얘기를 꺼냈을 때 과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이 혼란 내 입장 때문에 오히려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지' 등등 수만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에게 다칠 파장과 주변의 시선들이 두려워 '나만 덮어두고 조용히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만뒀어야 하는 현실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퇴직할 때까지 모든 것을 누릴 가해자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러던 나에게 가장 큰 용기를 준 건 A언니였다. 마치 언니의 일처럼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하고 그간의 겪었던 일들을 입 밖에 내뱉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던 나에게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직장에서 제소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조차도 겁나하고 두려워해서 무조건 피하고 숨어버리려고 했던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에게 대한 온갖 소문들과 추측들이 난무할 때에도 언니는 내 입장이 되어 그런 소문들을 불식시켜주려 노력했고, 그러한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던 나와 함께 울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루에 한 번 씩 전화를 걸어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며 연락이 되지 않으면 걱정해주는 사람, 밥 안 먹어서 배고프다며 나를 불러내서 식사 거르지 않도록 챙겨 먹이던 사람, 수만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

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나를 대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대리인 역할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주고 힘내라고 다독여줬던 사람, 그게 언니였다. 처음 언니한테 모든 일을 터놓고 얘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언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나에게 언니는 '인복 많은 네 덕분이다'며 한 발짝 물러서지만 언니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내가 겪었던 일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만 가둬둔 채 힘겨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직장 동료들도 모두 내 편이 되어 많이 힘이 되어주고 있다.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혼녀인 내가 항상 예의바르고 올곧은 가해자를 유혹해서 한 가정을 깨뜨리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돌았을 때, 막상 내가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소문이 사실인 양 퍼져 나갈 때에도 이 분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었다. 나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받을 나를 먼저 걱정해 주었고, 이왕 시작한 거 이런저런 말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힘내라며 오히려 격려해주었다. 심지어 이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겠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형사님도 내 편이 되어주었다. 사실 사회의 편견들 때문에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담당형사님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고, 수시로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내 전화도 귀찮아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주위의 시선과 마음고생으로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한데 마음 강하게 먹고 힘내라는 격려와 함께 혹시라도 내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보다도

더 큰 의욕을 보이는 담당형사님을 보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선처를 해달라던 가해자의 편지에 흔들렸던 내 마음을 다잡아본다.

앞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내가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 편이 되어 앞에서 뒤에서 함께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보같이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덮어두고 움츠러들려고만 했던 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든다.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내가 되어 마음의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대해 할 수 있는 보답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그리고 그때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용기가 되고 싶은 바람이다.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생존자에게 힘을 주다

나랑 | 본 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열림터에 살고 있는 성폭력 생존자 A의 가해자는 친부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A를 추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강간과 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A는 성인이 된 후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와 열림터로 오면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작년 2월,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 뿐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 또한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내용이기엔 반가운 마음에 소개한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다

다른 성폭력 피해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친족성폭력 피해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 등에 외상이 있었다고 해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지 않는 한 상처가 발견되기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서는 생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시하게 되는데, 오랜 기간, 몇 차례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생존자는 정확하게 날짜나 장소를 기억하기 힘들고, 또 힘든 기억인 만큼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기억이 뒤섞일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생존자나 생존자 주변인들의 진술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생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십수 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진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 불일치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생존자와 생존자 친구, 전 남자친구 등이 증언한 내용이 아주 상세한 내용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기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A가 대학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외박을 하고, 이에 가해자가 간섭과 질책을 하면서 용돈을 주지 않자 미운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외박으로 인한 질책이 두려운 나머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사실이 진실로 밝혀졌을 경우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미움으로 인하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다. 어떤 생존자가 가족과 단절되어 모든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끊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빠에 대한 미운 감정만으로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고소한단 말인가?

또 생존자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대해 진술한 것을 두고 품행의 문제로 여겨 낙인을 찍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진술 태도는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면서 A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주입을 지적하다

가해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강한 힘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달래면서 때로는 사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성폭력 가해를 지속했고, “피고인만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다 …… 피고인은 가족이니까 안전하고 끝까지 피해자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나중에 커서 남자친구와 할 일을 먼저 배우는 것이라는 등 “왜곡된 성의식 주입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접촉이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무력으로 생존자를 제압하기 보다는 ‘사랑’을 위장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생존자는 말을 잘 안 들으면 가해자의 성폭력이 더 잦아질까봐 두려워서 가해자에게 순종하기도 한다. 생존자가 성인이 되어서 명확하게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여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집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 걸음으로는 원만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여자를 꼼짝 못 하게 해서 때리고 강제로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아빠라도 나를 만져서는 안 되고,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는 A의 법정진술은 “낮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어두운 골목길을 조심하라”로 시작되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 예방 수칙이 친족성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공염불인지 알게 해 준다. 우리는 “NO”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서 “NO”라고 말하지 못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양가감정을 이해하다

성폭력 생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은, 친족성폭력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이다. 양가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찰·검찰·재판부의 협소한 인식으로 이어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해자들 역시 그 사실을 이용한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A가 가해자를 향한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한 이메일이나 수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표현한 위와 같은 사랑과 존경, 고마움 등의 감정은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해 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감정은 양립 가능하고 양립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 피해자가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성의식 주입으로 인해 피해의식의 강도가 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족성폭력 중에서도 가해자가 친아빠인 경우, 생존자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기에, 성폭력이 싫다고 해도 집을 뛰쳐나올 결심을 하기 쉽지 않다. 힘겹게 가해자와 분리된 후에도 생존자는 가해자를 미워하지만 때로는 가해자를 불쌍해 하며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해자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이는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싫지만, 저는 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보호하는 그런 것을 원했는데, 가해자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A의 법정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1) 주디스 루이스 허먼, 『근친성폭력, 감춰진 진실』, 삼인, 2010.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이중성을 간파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으로는 처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 지극히 평범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친딸을 성적인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 자신의 비정상적인 욕구를 채운 피고인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다.”면서 가해자의 이중성을 폭로했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아빠인 경우, 그 가해자는 가족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족 전체를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근친성폭력, 감춰진 진실』이라는 책도 이러한 특성을 담고 있다.

‘아버지는 한 치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적이었고, 때로는 힘을 과시했다. 아버지는 또한 가족의 사교생활 중재자였고, 사실상 여성들을 가정 안에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는 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반면, 외부인에게는 공감적이고 심지어 찬미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비치게 행동했다.’¹

더 많은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이번 판결은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피해 정황과 맥락, 양가감정과 가해자의 특성 등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여주어 고소를 한 A에게 큰 힘을 주었다.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친족성폭력 사건에 주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열거했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여 이러한 특징을 갖지 않은 친족성폭력 생존자를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스럽다. 부디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높은 판결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고소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1년 상담통계 분석

란 |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2011년 상담 동향 및 제언 }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2011년도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85.1%(980건)였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최근,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토대로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공개, 전자발찌 제도, 약물치료요법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해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는 여·남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7.9%(91건)이고,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 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32.4%(228건)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의 차별·폭력·고충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조직의 태도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문제제기 하여 부당해고 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풍토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개개인의 성찰이 필요하며,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서의 실질적인 책임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2011년 상담통계 현황 }

- ▶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11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상담은 총 45,541건(68,632회)이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총 37,629건으로 83.3%
- ▶ 2011년의 경우 총 상담건수 1,238건(1,764회) 중 성폭력상담은 총 1,151건으로 전체 상담의 92.9%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 피해자가 61.1%(703건)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정책 지원이 아동 중심으로 되어있으나 피해자의 대다수가 성인 여성인 현실을 고려, 균형 잡힌 법/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

〈표1〉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681 (59.2)	207 (17.9)	117 (10.2)	56 (4.9)	36 (3.1)	1,097 (95.3)
남	22 (1.9)	16 (1.4)	12 (1.0)	3 (0.3)	1 (0.1)	54 (4.7)
미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703 (61.1)	233 (19.4)	129 (11.2)	59 (5.1)	37 (3.2)	1,151 (100.0)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성인남성인 경우가 72.4%(833건)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72.2%(39건), 여성인 경우가 27.7%(15건)

피해자 성별에 관계 없이 대부분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되고 있음

〈표2〉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장애인	0 (0.0)	0 (0.0)	0 (0.0)	0 (0.0)	0 (0.0)
	비장애인	27 (2.3)	3 (0.3)	4 (0.3)	0 (0.0)	4 (0.3)
남	장애인	9 (0.8)	1 (0.1)	1 (0.1)	0 (0.0)	11 (1.1)
	비장애인	824 (71.6)	137 (11.9)	37 (3.2)	10 (0.9)	93 (8.1)
미상	1 (0.1)	0 (0.0)	0 (0.0)	0 (0.0)	0 (0.0)	1 (0.1)
총계	861 (74.8)	141 (12.3)	42 (3.6)	10 (0.9)	97 (8.4)	1,151 (100.0)

〈표3〉 남성피해자 중 가해자별 상담 현황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14 (25.9)	0 (0.0)	1 (1.9)	0 (0.0)	0 (0.0)	15 (27.7)
남	22 (40.7)	9 (16.7)	4 (7.4)	1 (1.9)	3 (5.6)	39 (72.7)
총계	36 (66.7)	9 (16.7)	5 (9.3)	1 (1.9)	3 (5.6)	54 (100.0)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장 많은 관계 유형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전체의 85.1%(980건)

피해 연령별 가장 많은 관계 유형

- 성인: 직장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 32.4%(228건)
- 청소년: 학교 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 - 28.3%(63건)

- 어린이·유아: 친족, 친인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 - 각각 53.5%(69건), 43.9%(26건)

성폭력이 피해자의 생활공간,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표4〉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유형	아는 사람 980(85.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5(16)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 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계	94 (8.2)	93 (8.1)	237 (20.6)	96 (8.3)	35 (3.0)	66 (5.7)	50 (4.3)	125 (10.9)	38 (3.3)	72 (6.3)	5 (0.4)	48 (4.2)	130 (11.3)	58 (5.0)	1151 (100.0)
성인 (20세 이상)	13 (1.8)	18 (2.6)	228 (32.4)	69 (9.8)	23 (3.3)	28 (4.0)	42 (6.0)	46 (6.5)	7 (1.0)	52 (7.4)	5 (0.7)	42 (6.0)	94 (13.4)	36 (5.1)	703 (100.0)
청소년 (19-14세)	36 (16.1)	17 (7.6)	4 (1.8)	23 (1.3)	12 (5.4)	11 (4.9)	7 (3.1)	63 (28.3)	12 (5.4)	10 (4.5)	0 (0.0)	6 (2.7)	15 (6.7)	7 (3.1)	223 (100.0)
어린이 (13-8세)	31 (24.0)	38 (29.5)	0 (0.0)	3 (2.3)	1 (0.8)	10 (7.8)	0 (0.0)	15 (11.6)	8 (6.2)	6 (4.7)	0 (0.0)	0 (0.0)	15 (11.6)	2 (1.6)	129 (100.0)
유아 (7세 이하)	8 (13.6)	18 (30.5)	0 (0.0)	0 (0.0)	0 (0.0)	14 (23.7)	0 (0.0)	0 (0.0)	9 (15.3)	2 (3.4)	0 (0.0)	0 (0.0)	4 (6.8)	4 (6.8)	59 (100.0)
미상	6 (16.2)	2 (5.4)	5 (13.5)	4 (10.8)	0 (0.0)	3 (8.1)	1 (2.7)	1 (2.7)	2 (5.4)	2 (5.4)	0 (0.0)	0 (11.3)	2 (5.4)	9 (24.3)	37 (100.0)

4

여성주의로 문화예술 읽기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과연 누구인가
 낱말퍼즐
 아낌없이주는나무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리스베트 살란데르는 과연 누구인가

당고 | 본 상담소 여성소셜읽기모임 회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의 열쇠는 역시 리스베트에게!

데이비드 핀치가 감독을 맡은 할리우드판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이하 〈밀레니엄〉)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 그리고 스웨덴판 영화와 거의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부패 기업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쓰는 바람에 소송에 걸린 기자 미카엘 블롬크비스트(대니얼 크레이그)는 재벌 회장 헨리크 방예르에게 40년 전에 실종된 조카딸 하리에트 사건을 의뢰받는다. 미카엘은 용 문신을 새긴 스물네 살의 천재 해커 리스베트 살란데르(루니 마라)와 함께 하리에트 사건을 공동으로 수사하게 되고, 리스베트가 해킹 실력을 발휘하자, 미카엘이 들고 있던 방대한 자료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한다.

유명 감독이 연출한 영화답게 이 작품에는 꽤 여러 가지 미덕이 존재한



다. 원작 소설에서 가져온 흥미진진한 추리 구조와 뮤직 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타이틀 시퀀스, 핀치의 주특기인 매끈한 편집 기술, 이미지를 통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두 시간을 훌쩍 넘기는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결같이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리스베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오래.

핀치는 인터뷰를 통해 “원작의 스타일과 방식을 좋아했지만 진정으로 관심 있었던 것은 바로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각본가 스티븐 자일리언도 “역시 열쇠는 리스베트”라고 말하며 핀치와 자신의 이번 영화 〈밀레니엄〉을 “미카엘로 시작하여 리스베트로 끝나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감독과 각본가¹를 비롯하여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켰던 리스베트는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도대체 리스베트란 인물의 무엇을 본 것이고 무엇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에 끌렸던 것일까?

믿을 수 없이 매력적인 그녀의 믿을 수 없이 텅 빈 이야기

리스베트는 일단 외양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몸에 새긴 용 모양의 문신, 까맣고 짧고 기묘하게 스타일링된 헤어, 하얗고 창백한 얼굴에 색이 빠진 눈썹과 짙은 스모키 아이, 귀와 눈썹과 코와 입술에 달린 피어싱, 가느다랗고 얇은 몸피, 라이더 재킷에 배기바지까지 개성 강한 외모를 자랑한다. 그녀의 성격과 행동 또한 범상치 않다. 리스베트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과 천재적인 컴퓨터 해킹 실력을 가졌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줄담배를 피우며, 지하철에서 자신의 배낭을 날치기한 남자를 재빠르게 뒤쫓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 친구와 잠을 자며, 자신을 강간한 새 후견인을 고문하고 몸에 문신을 새겨 강간범의 낙인을 완성한다.

나열한 특징들만 생각하면, 리스베트는 매우 파격적이고 자유로우며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처럼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영화를 보고 우리가 리스베트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고 싶어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핀처판 <밀레니엄>의 리스베트는 그다지 해석가능하거나 설명가능한 캐릭터가 아니다. 영화는 리스베트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리스베트의 트라우마와 그녀의 성정체성이다.

영화는 새 후견인이 리스베트를 강간하고 리스베트가 후견인에게 복수하는 장면을 꽤 긴 시간에 걸쳐 묘사한다. 또한 복수를 완수한 리스베트가

후견인을 찾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협박하는 모습까지 덧붙인다. 영화가 후견인과 리스베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사건을 이토록 공들여 묘사하는 것에 비해, 그녀의 더 깊고 오래된 트라우마를 매우 모호하고 흐릿하게 제시한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 리스베트는 아무런 맥락도 없이 미카엘에게 아버지를 태워 죽이려 했는데 80퍼센트만 성공했다고 말한다. 영화는 리스베트가 왜 후견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성폭력 가해자

들에게 강한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으며, 어쩌서 그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복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성의 학대와 살해가 뒤엉킨 하리에트 사건에 매달리는 그녀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극 초반에 리스베트는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서 그녀와 밤을 보낸다. 이때까지 리스베트는 거의 여성을 리드하는 스타일의 레즈비언이자, 미카엘이 찾아왔을 때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굳이 숨기지 않는 쿼어로 묘사된다. 하지만 미카엘을 만난 후로 그녀는 종종 매우 조심하고 수줍은 소녀처럼 군다. 말보로 담배를 피우며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한 바람둥이 저널리스트에게 반해서 사랑받고 싶은 연약한 여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충격을 당한 남자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며 섹스를 하는 리스베트,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당신과 일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리스베트, 옛 후견인에게 미카엘을 만나서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리스베트, 연쇄살인범을 쫓아가려다 미카엘을 보고 “죽여



1) 정한석, “데이비드 핀처에 의해 태어난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씨네 21》, 2012.1.17.

도 돼요?”라고 묻는 리스베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들을 증오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마초 남성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덥석 받아들인다고? 언빌 리버블. 그걸 믿게 하려면, 적어도 리스베트가 미카엘을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미지를 통해서든, 언어를 통해서든.

남자를 증오한 여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리스베트와 미카엘 콤비가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유로 통쾌함이나 후련함을 느끼는 관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해킹, 문신, 피어싱, 쿼어, 바이크, 프리섹스, 금치산자, 아웃사이더, 피해자, 여성, 복수, 대항 폭력……. 수많은 이미지와 정체성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리스베트는 철저히 혼자이며 끝끝내 혼자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미카엘을 찾아가간 리스베트는 미카엘이 옛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쓸쓸히 돌아선다.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를 동분서주 헤집고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녀의 현실에는 그 어떤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리스베트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다 매우 능력 있는 인물이지만, 그녀의 내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카엘에게 차이고(?) 돌아서는 리스베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미카엘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컴퓨터나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네트워크 말이다. 네트워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으려면, 서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리스베

트란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세심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가 만들어갈 세상에 관심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녀와 네트워크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열쇠는 여전히 리스베트의 손에 있다. 앞으로 2편과 3편의 제작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 리스베트란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성실한 탐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가로 열쇠

2. 4월 11일, 이들을 선출하는 19대 총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5.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생존자 특별 지원금 프로그램. 생존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6.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 ○○○, 유권자 ○○○ 등 투표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 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거리 ○○○을 진행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상담소의 정책 요구안을 알릴 계획이다. 사회·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9. 이번 <쟁점과 입장>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측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가해자측 변호사를 ○○○○ 방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10. 스웨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3부작 중 1부인 '용 문신을 새긴 소녀(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의 헬리우드판이 한국에서 개봉되면서 원작 소설과 스웨덴판 영화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여성주의로 문화예술 읽기>에서는 이 작품의 여성 캐릭터를 분석했다. 새로운 천 년을 시작하는 시기를 뜻하는 영어. ○○○○.
1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년 이상 ○○○○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총선을 맞아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제언을 담은 ○○○○ 정책 제안서를 펴내기도 했다. 본 소식지명.
14. 소규모 다과 모임을 개최하여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운동. 2010년 2월, 보수진영의 티파티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열렸으며, 현재는 한국에서도 유권자 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가장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커피당이라고도 한다. ○○○○운동.
16. 최근 몇 년사이 ○○○로서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들의 투표를 통해 좋은 정치인을 선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두려워하는 존재 중 하나다. 선거인과 같은 뜻.

세로 열쇠

1. 2011년 6월, 고려대 의과대학 ○○○들의 같은 과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의과대학 학생을 이르는 말.
3. 이번 호 <프리즘>에서는 이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4. 이른바 '나는꿈수다 코피 사건'은 구속된 모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여성들이 ○○○ 복장으로 사진을 찍어 시위를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호 <성문화읽기>에서는 해당 시위를 두고 여러 진영의 인물들이 가상 대담을 벌이기도 했다.
7. 이번 호 <성문화읽기>에서는 '나꿈수 코피 사건'의 '비키니 시위'에 관한 가상 대담이 마련되었다. 4명의 참여자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꿀페미'는 본래 '꿀통○○○○'의 줄임말로 조롱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은 반어적인 의미로 활용하기도 한다. 용례는 "그래, 나 꿀페미다. 어쩔래." 등. 여성주의자. ○○○○.
8. 19대 총선을 앞둔 현재,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서로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약과 행실로 유권자와의 신뢰를 쌓으며 공정하게 선거를 치뤄내야 한다.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다는 뜻. ○○.
11. 성폭력의 경우, 사건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가해자 및 주변인 등에 의한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호 <쟁점과 입장>에서는 가해자 및 변호인에 의한 피해자의 ○○○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반대말은 '2(이)차 가해'.
13. 2월 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 의료인에 대한 취업규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는 말.
15. ○○ 모아 태산.

<반성폭력> 4호를 읽었다면 맞출 수 있는 낱말퍼즐.
힌트는 물론 본문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답을
6월 말까지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하여 두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ksvrc@sisters.or.kr

주소 (121-884)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곳 _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_

만든이 _

디자인 _ 디자인IS

펴낸날 _ 2012년 4월 일

주소 _ (121-88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_ 02-338-2890~2

팩스 _ 02-338-7122

홈페이지 _ www.sisters.or.kr

이메일 _ ksvrc@sisters.or.kr

블로그 _ www.stoprape.or.kr

트위터 _ www.twitter.com/stoprape

「반성폭력」은 디자인IS의 재능기부로 디자인되었습니다.